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1012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 1. A종교단체 B교회

2. C

피고 1. A종교단체 D교회

2. E

변론 종결 2014. 12. 18.

판결 선고 2015. 1.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4. 접수 제735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별지 1 부동산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접수 제822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A종교단체 D교회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제1, 2, 3,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6. 접수 제415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E은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A종교단체 D교회 명의의 예금 30,000,000원에 대한 금전예금반환 청구권자가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임을 확인한다.

4.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반환서류목록 기재 교회관련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종교단체 F교회의 설립 및 피고 E의 담임목사 임명

1) A종교단체 F교회(이하 '구 F교회'라 한다)는 1999년경 설립되었는데 당시 A종교단체 합동측교단 G노회(이하 'G노회'라 한다) 소속으로서 제2 부동산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였다. 설립 당시 담임목사는 H이었고 그 후임으로 I 목사가 부임하였다가 2012. 5.경 사임하였다.

2) 구 F교회(임시당회장: J목사)는 2012. 10. 14.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세례교인 8명이 당시 A종교단체 합동교단 K노회 소속 목사였던 피고 E을 구 F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G노회에 피고 E을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는데, G노회는 2012. 11. 9.경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세례교인 25명의 결의가 없었고 E목사에 대한 이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E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보류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이에 구 F교회 소속 교인들1) 중 11명(세례교인 : 원고 C 및 L, M, N, O, P, Q, R, S, 비세례교인 : T, U)은 2012. 11. 20. A종교단체 합동교단 및 G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대구일보에

교단탈퇴공고를 게재하며 G노회에 탈퇴의사를 통보하였다.

4) 원고 C은 그 후 G노회에 위 탈퇴의사를 철회하였다가 'G노회가 당회장을 H목사가 아닌 V 목사로 하고 행정일체를 노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탈퇴철회 의사를 다시 철회하였다. 이에 G노회는 구 F교회를 G노회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5) 구 F교회는 그 후 A종교단체 합동보수교단 W노회(이하 'W노회'라 한다)에 노회가입신청을 하였고, W노회는 2013. 1. 15.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구 F교회의 노회가입을 승인하고 피고 E을 구 F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나. 구 F교회의 대표자명의 및 교회명칭변경

1) 구 F교회는 2013. 1. 24. 운영위원회(참석운영위원 : 피고 E, 원고 C 및 L, O, N)를 개최하여 '교회의 대표자를 E에서 피고 E으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W노회는 같은 날 구 F교회에 '구 F교회(대표자 E)가 W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소속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구 F교회는 2013. 1. 24.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3 등기사항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소유자 구 F교회의 대표자명의를 C에서 E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구 F교회는 2013. 1. 27. 운영위원회(참석운영 위원 : 피고 E, 원고 C 및 L, O, N)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결의를 한 후, 2013. 1. 28.

영덕세무서에 구 F교회의 대표자를 피고 E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3. 2. 22.

평해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3. 2. 27. 평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4) 구 F교회는 2013. 3. 24. 운영위원회(참석운영위원 : 피고 E 및 N, AC, AD, AB, AE)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피고 E 및 N, AC, AD, AB, AE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변경에 찬성한 교인은 18명(AF, Z, AG, AH, AI, AB, AC, AJ, S, AK, N, AL, AM, AN, AO, AP, AQ, AR)이었다.

5) 구 F교회는 2013. 4. 28.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성년 세례교인 22명2) 중 17명이 참석하여 교회 명칭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였는데 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의견 9명, 반대의견 5명이었고, 변경되는 교회 명칭을 피고 A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고 D교회'라 한다)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의견 8명, 반대의견 4명이었다.

6) 구 F교회는 2013. 5. 6. 운영위원회(참석운영위원 : 피고 E 및 N, AC, AD, AB, AE)를 개최하여 '피고 E을 2013. 5. 1.로 구 F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교회 명칭을 구 F교회에서 피고 D교회로 개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7) 구 F교회는 2013. 5.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3 등기사항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등기명의인을 A종교단체 F교회에서 피고 D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교회명칭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D교회의 원고 C 등에 대한 출교처분

1) 피고 D교회는 2013. 5. 9. 운영위원회(참석운영위원 : 피고 E 및 N, AC, AD, AB, AE)를 개최하여 'O의 직분을 박탈하고 재직 및 회계 직분을 직권 정지하며, 원고 C 및 L에 대하여 무기한 직분 및 직권 정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 D교회는 2013. 5. 16. 운영위원회(참석운영위원 : 피고 E 및 N, AC, AD, AB)를 개최하여 '원고 C 및 L, O, U를 D교회에서 출교한다'는 결의를 하고, 2013. 5. 2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R, T, P, Q, AA을 D교회에서 출교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 C 등의 교회활동

1) 위 출교처분에 따라 출교된 원고 C 등 9명의 교인들은 2013. 6. 9.경 H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후 원고 C 소유의 경북 울진군 BA 소재 BB여관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하면서 교회활동을 하였고,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원고 B교회'라 한다)라는 교회명칭으로 A종교단체 BC노회(이하 'BC노회'라 한다)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2) BC노회는 2013. 7. 11.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원고 B교회의 BC노회 가입을 허락하며 H 목사를 원고 B교회의 위임목사로 인정하고, 노회의 명칭을 BC노회에서 BD노회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마. W노회의 교회명칭변경 승인

1) W노회는 2013. 7. 16.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구 F교회의 명칭을 피고 D교회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 전권위원회(위원 목사 BE, BF, BG, BH, BI, BJ, BK)를 조직하여 원고 C 및 L, O, U, R, T, P, Q, AA, M 등 10명에 대한 출교처분위탁청원을 처리하기로 결의한 후 위 임시노회를 잠시 중단하였다.

2) 그 후 위 전권위원회는 속회된 위 임시노회에 위 결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위 임시노회는 위 전권위원회의 결의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내지을 제7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36호증, 을 제37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O, L, N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A종교단체 총회, A종교단체 합동교단 G노회, A종교단체 합동보수 W노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피고 D교회는 피고 E이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구 F교회를 탈퇴하여 새로이 설립한 교회에 불과하고, 구 F교회를 승계한 유일한 교회는 원고 C 등 출교된 교인들이 설립한 원고 B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 및 교회명칭변경등기의 말소, 금전지급, 금전예금반환청구권자확인, 서류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C 등이 피고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카합38호 교회출입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신청 및 위 법원 2013카합40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그 각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원고들이 동일한 당사자 및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사건명만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거나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소권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중복제소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가처분 사건이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가처분 사건이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E은 구 F교회가 소속된 G노회로부터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임시목사 승인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 F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구 F교회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 C에서 피고 E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인 구 F교회(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피고 D교회)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에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로 인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소로써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표자명의변경등기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교회명칭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구 F교회의 대표권이 없는 피고 E은 ① 구 F교회의 교인들이 G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한 바 없음에도 노회탈퇴서를 위조하여 G노회에 제출하고, ② A종교단체 합동교단의 헌법에 위반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 F교회의 명칭을 '피고 D교회'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게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구 F교회에서 피고 D교회로 변경하는 이 사건 교회명칭변경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D교회는 구 F교회와는 별개의 교회이며 이 사건 교회명칭변경등기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구 F교회를 적법하게 승계한 원고 B교회 및 원고 C은 피고 D교회에게 위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F교회는 설립 무렵부터 제2 부동산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회명칭변경등기가 마쳐진 2013. 5. 6.경 이후에도 제2 부동산은 피고 D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G노회의 탈퇴는 원고 C 등 구 F교회 교인들에 결의에 의한 점(원고들은 G노회 탈퇴결의서(을 제4호증의 1)는 청빙승인을 위한 교인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백지에 교인들이 서명을 받아 놓은 것에 피고 E이 노회탈퇴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O, L의 각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O, L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C 및 O, L가 노회탈퇴공고를 논의하고 실제 탈퇴공고를 하였던 점, 원고 C이 G노회를 찾아가서 탈퇴의사를 철회한다고 하였다가 그 철회의사를 다시 철회하여 구 F교회의 G노회탈퇴가 확정되었던 점, 원고 C이 구 F교회가 G노회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평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무렵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교회명칭의 변경은 구 F교회의 2013. 4. 28.자 공동의회 결의를 거쳤고 그 후 W노회의 승인도 득한 점, ④ 2013. 4. 28.자 공동의회에서 교회 명칭 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구 F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로 교회 명칭변경 결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⑤

원고 C은 이 사건 교회명칭변경등기 이후 피고 E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사이에 다툼이 격화되자 2013. 6. 9.경 H 목사를 청빙하고 BB여관건물 지하에서 예배활동을 하고 원고 B교회의 이름으로 BC노회에 가입하는 등 피고 D교회와는 별도의 교회활동을 한 점, ⑥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E이 구 F교회의 위임목사로 임명되는 과정 및 F교회의 명칭변경 과정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 F교회와 피고 D교회의 동일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교회는 구 F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 B교회가 구 F교회를 탈퇴한 원고 C 등이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회명칭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인 구 F교회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교회명칭변경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다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회명칭변경등기 과정에 있다면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을 뿐이다).

4. 이 사건 각 변경등기 말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본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교회의 금전청구 및 금전예금반환청구권자 확인청구

1) 청구원인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은 구 F교회를 승계한 원고 B교회의 소유인데 피고 E이 2013. 5. 13. 피고 D교회 명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2,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 B교회는 피고 E에 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3,000만 원의 예금채권의 채권자가 원고 B교회임을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B교회의 주장은 원고 B교회가 구 F교회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B교회는 구 F교회와는 별개로 새로 설립된 교회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교회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서류반환청구

1) 청구원인 피고 E은 구 F교회3)의 당회장이나 행정목사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당회장행세를 하면서 구 F교회의 문서들을 관리하였고, 피고 D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구 F교회 소유의 문서들을 점유한 채 원고 B교회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구 F교회 소유 문서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B교회가 구 F교회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B교회는 구 F교회와는 별개로 새로 설립된 교회라 할 것이고 피고 D교회가 구 F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만호

판사염경호

판사배구민

별지

1) 2012년도 교인명부에 의하면 구 F교회의 교인은 세례교인 원고 C 및 L, M, N, O, P, Q, R, X, Y, S, E, Z 등 13명, 비세례교인은 T, AA, AB, U 4명으로 총 17명이었으며 원고 C은 당시 장로이었다.

2) 2013년도 교인명부에 의하면 구 F교회의 세례교인은 피고 E, 원고 C 및 Z, L, P, Q, M, N, S, O, R, AB, AD, AC, AL, AQ, AN, AM, AF(미성년자), AS(미성년자), AR(미성년자), AJ(미성년자), AT(미성년자), AP, AU, AE, AA 등 27명이었고, 비세례교인은 T, AV, U, AH, AO, AW, AX, AY, AZ 등 9명이었다.

3) 원고들은 구 F교회와 원고 B교회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소장에서는 '원고 교회'라고 기재하였다.